

제44화

금리인하요구권,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바립니다!

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
'금리인하요구권'이 '19년 6월에 법제화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.
금융소비자가 해당 권리들 더 잘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협회 그리고
금융회사가 권리체계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여,
'22년부터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인 '금리인하요구권'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바립니다!

'금리인하요구권' 어떻게 바뀌나요?

① 안내 및 홍보강화

대출계약전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, 핵심항목 등을 제시한 **'고객 안내·설명 기준'**을 수립하여

해당 내용을 **(상품)안내장**에 반영하게 됩니다.

* 고객안내 핵심항목

- ①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
- ②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
- ③ 금리인하 신청요건
- ④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
- ⑤ 유의사항

대출계약시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의 구성과 내용이 개선됩니다.

* 대상부분을 표시하는 체크박스(□)를 설명서 상단으로 이동하고, 중요 문구에 멋쓰기 추가

대출기간중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상품 차주에게 연 2회 정기적으로 재안내합니다.

② 권리 신청요건의 표준화

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금융업권과 회사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던 것을 개선하여, 금융업권과 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

'신청요건 표준안'이 마련되어 금융소비자가 더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.

'금리인하요구권'으로 어떤 점이 바뀔까요?

금융소비자의 금융센스 향상

평소 본인의 신용평점 등에 관심을 갖고 개선·관리하는 시도를 통해, 금융소비자의 금융센스가 향상됩니다.

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

취업,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됩니다.

금융소비자의 만족도 향상 및 어려움과 수고 경감

신청·심사 절차가 개선되어 권리행사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금리인하 신청요건 표준안(마계대출 기준)

소득·재산 증가

- 소득 증가(취업, 승진, 이직, 전문자격 취득 등)
- 재산 증가(자산 증가, 부채감소)
- 기타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신용도 상승

-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

기타

- 상기사항 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
- 기타 금융회사가 정하는 사항(우수고객 선정 등 자체운영 항목 기재)

또한, 업권별로 모든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 적용시점이 통일됩니다.

* 은행, 저축은행, 여신전문금융회사: 금리변경 약정시점
보험사: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시점

금융소비자가 통지받는 **'불수용 사유 통지서식'**이 표준화 됩니다.

<불수용 사유 유형별 안내 문구>

- ✓ 귀하의 대출은 신용상태가 금리인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로 금리인하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✓ 귀하의 신청사유 및 제출자료를 심사한 결과, 귀하가 이용 중인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당행 내부신용등급이 개선되지 않아 금리를 알리드립니다.
- ✓ 귀하께서는 이미 당행 내부 신용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거나,
이외 동일한 신용도가 적용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.



생생금융인포